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내실화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장거리 운행 및 과다 적재 등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항목 내실화(제80조, 별표 15 및 16, 별지 제48호의3서식)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불량 상태 구체화 및 전자장치 진단 검사시 부적합 고장진단 코드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의 진단을 위한 전자장치진단기 사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동차검사결과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일원화하여 모든 검사기관에서 동일한 검사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서식에 배터리 상태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대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개선(제80조 제2항)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앞바퀴에 내구성이 약한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원동기의 비정상적인 진동·소음 발생, 윤활유 유량 기준 과소·과다 및 연료 계통의 심한 부식 등의 경우 자동차의 검사 결과 처리 시 부적합 처리하도록 규정

다. 자동차검사 관련 규제 개선(제80조, 제154조의2, 별표 15·16·18)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의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기준 중 검사 전용진로는 1개로 하되, 총 중량 5.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검사 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호다목 중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원동기

가.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진동·소음 발생

나. 원동기 윤활유의 유량 기준 과소 또는 과다

다. 냉각계통의 손상 및 냉각수의 누출

제80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80조제2항제5호다목 중 “연료”를 “연료계통(연료장치와 연결된 파이프, 호스를 포함한다)의 심한 부식 또는 연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 중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를 “접속·절연·표시 및 설치상태”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운행기록장치·속도제한장치”를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

적합 통지서 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을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으로, “기재하여”를 “상세히 기재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를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한다.

마. 고전원전기장치의 전자장치진단 결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장진단코드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 제77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을 “자동차기능종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한다.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제136조제1항제4호 중 “영 제14조의6”을 “영 제14조의7”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4조의2제1항 중 “영 제14조의6제3호”를 “영 제14조의7제3호”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16)나) 중 “기준에 적합”을 “기준(측정값 지시오차 $\pm 3\%$ 이내)에 적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6)나) 중 “기준에 적합”을 “기준(측정값 지시오차 $\pm 3\%$ 이내)에 적합”으로 한다.

7)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가 없거나, 전자장치진단기로 전자제어 장치의 항목별 진단을 실시한 후에도 진단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다. 자동차가 검사기기·계측기·감각기관·서류 등에 의하여 검사 방법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하고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신청 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6 제2호 비고란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장치진단기는 원동기부분전자제어장치, 새시(동력전달장치 포함), 에어백(Air Bag),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운전보조장치(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포함),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 등에 관련된 전자제어장치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10)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의 측정 범위는 0 ~ 100%이고 정밀도

는 측정값의 $\pm 3\%$ 이내여야 한다.

별표 18 제1호의 검사용 기계 · 기구의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의 자동차종합정비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대 이상(측정범위는 0 ~ 100%, 정밀도는 측정값의 $\pm 3\%$ 이내일 것)

별표 18 제1호 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호 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주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 전용진로는 1개에 한정한다(단, 총중량 5.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를 검사하기 위한 진로 1개 추가 설치 가능)

10. 전자장치진단기는 원동기부분전자제어장치, 새시(동력전달장치 포함), 에어백(Air Bag),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운전보조장치(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포함),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 등에 관련된 전자제어장치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검사일자: 년 월 일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명		차 명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최초등록일	
다음 검사일 ¹⁾		재검사 기간 ²⁾		주행거리	km

- 1) 다음 검사는 위의 다음 검사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2) 재검사 대상 자동차는 위의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기간 경과 시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와 검사 재신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항목				안전진단기준(검사기준)		진단결과	진단의견	검사원		
조향계통		앞바퀴 정렬		옆방향 미끄러짐 정도 (1m 주행에 5mm 이내)						
		조향계통 설치상태 등		변형 · 느슨함 · 누유여부 파워스티어링 오일량						
주행계통		차축 · 타이어 · 휠		외관 손상 · 변형 · 돌출여부 타이어 상태						
		변속기 추진축 등		변속기 오일 오염도(진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추진축 · 등속조인트(손상 · 변형) 클러치 유격상태						
		뒷바퀴 정렬(옆 방향 미끄러짐)								
제동계통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력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50% 이상		%(측정값: kg)			
				후	앞축무게(kg)의 50% 이상					
			뒷축	전	뒷축무게(kg)의 20% 이상		%(측정값: kg)			
				중후	뒷축무게(kg)의 20% 이상					
			전체 브레이크		전체무게(kg)의 50% 이상		%(측정값: kg)			
			주차브레이크		전체무게(kg)의 20% 이상		%(측정값: kg)			
		좌 · 우 차이 (편차)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8% 이하		%(: kg)			
				후	앞축무게(kg)의 8% 이하		%(: kg)			
			뒷축	전	뒷축무게(kg)의 8% 이하		%(: kg)			
				중	뒷축무게(kg)의 8% 이하		%(: kg)			
			후	중	뒷축무게(kg)의 8% 이하		%(: kg)			
				후	뒷축무게(kg)의 8% 이하		%(: kg)			
		제동계통 설치상태 등			견고한 설치 · 손상 · 오일누출 배력(booster)장치의 작동상태					
					디스크 · 패드상태					
등화장치		전조등	광도	좌/우	3,000cd 이상		좌측밝기: cd 우측밝기: cd			
			진폭	좌	설치높이 ≤ 1.0m	-0.5% ~ -2.5%	높이: m 진폭: %			
				우	설치높이 > 1.0m	-1.0% ~ -3.0%	높이: m 진폭: %			
		기타 등화		등화장치 점등 및 설치상태 등						
배출가스		휘발유 L P G		검사방법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경유		검사방법						
				매연						
				최대출력						
		엔진회전수								
배기,소음 발산방지장치		배기관 · 소음기 · 촉매장치의 손상,변형 등이 없을 것								
계기 계통		속도계		40km/ℓ일 때(32 ~ 44.4km/h)						
		계기장치		운행기록계 · 최고속제한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진단항목			고장코드
자 기 진 단 센 서 점 검			
	배 터 리	진단항목	진단결과
		안전 점검	고전압 부품 절연
			배터리 셀 간 전압편차
			배터리 모듈 온도
	성 능 점 검	총 동작시간	
		누적 총·방전량	
		배터리 충전량(SOC)	
		배터리 열화상태(SOH)	
		급속 충전 횟수	
			진단의견

검사항목		결과 및 의견	
관 제 (제 안) 검 사	엔진오일 오염도 / 벨트상태 원동기 이상음 / 시동장치 / 방열기		
	동일성 / 차대 및 차체 / 물품적재장치		
	(승차 / 조종 / 완충 / 방화)장치		
	경음기 / (연결 및 견인 / 전기)장치		
	연료장치 / 내압용기 / 시야확보 / 창유리		
	기타장치		
서비스 제공			
종합 진단결과		<종합의견> <부적합 내용> <시정권고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소 검사책임자

인

별지 제4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1호 나목7) 및 같은 호 다목, 별표 18 제2호 검사용 기계·기구의 전자장치진단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준에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 절차는 제8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생략)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 -----. ----- ----- ----- ----- ----- ----- -----.
1. 동일성 확인	1.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다.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신 설>	1의2. 원동기 가.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u>진동 · 소음 발생</u>
	<u>나. 원동기 윤활유의 유량 기준 과소 또는 과다</u>
	<u>다. 냉각계통의 손상 및 냉각수의 누출</u>
2. 주행장치	2.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설></u>	<u>라.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u>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5.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연료의 누출</u>	다. <u>연료계통(연료장치와 연결된 파이프, 호스를 포함한다)의 심한 부식 또는 연료----</u>
6. 전기 · 전자장치	6.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u>	라. ----- <u>접속 · 절연 · 표시 및 설치상태----</u> ----
<u><신설></u>	<u>마. 고전원전기장치의 전자장치진단 결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u>

7. ~ 12. (생 략)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 ·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
 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
 과 허용기준 초과

14. ~ 22. (생 략)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
 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 중 부
 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
 서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
 적합 통지서 또는 별지 제48호
 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
 단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
 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
 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 4의2. (생 략)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

고장진단코드

7. ~ 12. (현행과 같음)

13. ----- 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14. ~ 22.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
동차기능종합 -----

 ----- 상세히 기
재하여 -----

 -----.

1. ~ 4의2. (현행과 같음)

5. -----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통지서의 발급

④ ~ ⑥ (생략)

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 ① 제77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 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0조제3항의 검사부적합통지서의 발급은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의 발급으로 같음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에 같음하여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기능종합진단서-----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 제77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illegible]

1. -----
----- 자동차기능종합 -----

2. -----

----- 자동차
기능종합진단서-----

가. (현행과 같음)

4. _____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
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3. ----- 자동차기능종합진단
서-----

② (현행과 같음)

③

따른

따른

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④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
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
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
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
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6에
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 (생략)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
산처리) ① (생략)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6제3호
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

-----.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

-----.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영 제14조의7 -----

② (현행과 같음)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
산처리)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7제3호

는 파손 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② (생략)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空車)상태에서 시행하며 그 외의 항목은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적재물의 중량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적차(積車)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자동차의 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기·계측기·감각기관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각기관·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자동차의 제원측정 시 구조 및 제원이 자동차등록증, 자기인증(제원표) 또는 튜닝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 2)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 배기관의 열림방향, 경적음, 배기소음 및 타이어 공기압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삭제 <2021. 10. 14.>
- 4) 「소방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제시할 때 그 항목을 확인하는 경우
- 5)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6)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인 경우
- 7)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가 없거나, 전자장치진단기로 전자제어장치의 항목별 진단을 실시한 후에도 진단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8) 자동차가 검사기기·계측기·감각기관·서류 등에 의하여 검사방법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하고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신청 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가. 비사업용 자동차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16) 창유리	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유리(접합·안전)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측정값 지시오차 ±3% 이내)에 적합 할 것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섀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나. 사업용자동차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16) 창유리	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유리(접합·안전)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측정값 지시오차 ±3% 이내)에 적합 할 것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섀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기술인력기준 (제82조 관련)

1. 검사시설

가.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하되, 본검사소는 1,000㎡ 이상, 소규모검사소는 3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용지 중 수검차량의 진입·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다. 검사장은 1검사진로 당 65m²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은 수검자의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검사장비

품 명	비 고
가. 사이드슬립측정기	1)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공기과잉률측정기, 전자장치진단기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제동시험기	
다. 속도계시험기	
라. 전조등시험기	
마. 소음측정기	2) 1개의 검사기기로 2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검사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사. 일산화탄소측정기	3) 영상촬영용 사진기는 촬영된 검사장면이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실시간 전송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아. 탄화수소측정기	
자. 가스누출감지기	4) 전자장치진단기는 원동기부분 전자제어장치, 새시(동력전달장치 포함), 에어백(Air Bag),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운전보조장치(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포함),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 등에 관련된 전자제어장치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차. 공기과잉률측정기	
카. 영상촬영용사진기	
타. 전자장치진단기	5) 기타 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쇼크업소버)측정기, 하체영상촬영장치, 타이어 트레드 깊이 자동 측정장치, 자동제원측정기, 등록번호판 자동인식장치 등을 갖추어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파. 4주(柱)식 리프트 (씨저스 리프트를 포함한다)	
하. 계측자	6) 국제보호등급 시험기는 손가락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 검사를 위한 손가락모형 시험기와 철사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D) 검사를 위한 철사모형 시험기를 갖추어야 한다.
거. 휴대용 내시경	
너. 절연저항시험기	7) 자동차 상단부에 설치된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검사용 리프트 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더. 국제보호등급(International Protection Code) 시험기	
러. 매연 포집시설	8)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자동차 고전원 이상의 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및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한다.
머.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9) 매연 포집시설은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하는 구조로서,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10)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의 측정 범위는 0 ~ 100%이고 정밀도는 측정값의 ±3% 이내여야 한다.

주: 각 목의 검사장비는 1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소의 경

우에는 파목부터 거목까지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3. 검사기술인력

가. 검사책임자: 검사소당 1명(검사책임자는 검사진로 당 검사원수에 포함한다)

나. 검사원

검사진로 당 연간 검사대수	검사진로 당 검사원수
(가) 7천대 미만	1인 이상
(나) 7천대 이상 1만5천대 미만	2인 이상
(다) 1만5천대 이상 2만5천대 미만	3인 이상
(라) 2만5천대 이상	4인 이상

주: 1.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지역은 종합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가목 및 나목의 검사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출장검사를 행하는 검사소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검사원을 가산(소수점 이하는 1 인으로 산정)하되, 출장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본검사소의 검사진로 당 검사 인원으로 산정한다.

1주당 출장검사횟수/6

3. 검사진로 당 연간 검사대수(출장검사 대수를 제외한다)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모든 검사업무를 실적을 합산하되, 차대번호 등의 표기, 안전검사, 신규검사, 튜닝승인, 튜닝검사 및 수리검사의 실적은 1대를 2대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제55조 및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86조관련)

1.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검사업무의 범위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검차장 시설 (피트 또는 리프트)	면적	피트: 65㎡ 이상 리프트: 60㎡ 이상	피트: 36㎡ 이상 리프트: 32㎡ 이상
	검사진로 (길이×너비×높이)	피트: 13m×5m×4m 이상 리프트: 12m×5m×4m 이상	피트: 9m×4m×2.5m 이상 리프트: 8m×4m×4m 이상
	피트 (길이×너비×깊이)	8m×0.8m×1.5m 이상	5m×0.75m×1.5m 이상
	리프트 (길이×너비×상승높이×용량)	4m×2m×1.5m×4,000kgf 이상	4m×2m×1.5m×4,000kgf 이상
	진입·진출로	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검사용 기계 · 기구	사이드슬립측정기	허용축하중 10,000kgf 이상의 것 1대 이상	허용축하중 1,500kgf 이상의 것 1대 이상
	제동시험기	허용축하중 10,000kgf 이상의 것 1대 이상	허용축하중 1,500kgf 이상의 것 1대 이상
	속도계시험기	허용축하중 10,000kgf 이상의 것 1대 이상	허용축하중 1,500kgf 이상의 것 1대 이상
	전조등시험기	1대 이상	
	전자장치진단기	1대 이상	
	배기가스(Co/Hc) · 공기과잉률	각 1대 이상(검용의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측정기	
	매연측정기	1대 이상
	매연 포집시설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로서,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일 것
	가스누출감지 기	1대 이상
	소음측정기	보통소음계 또는 정밀소음계 1대 이상
	영상촬영용사 진기	1대 이상
	절연저항시험 기	1대 이상(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시광선투과 율 측정기	1대 이상(측정범위는 0 ~ 100%, 정밀도는 측정값의 $\pm 3\%$ 이 내일 것)
	기타	표준가스 및 매연표준지(검·교정용품), 영상보관용단말기
전기식 택시미터 사용 검정기기	주행검사기	거리의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사무실	면적	10㎡ 이상(다른 사무실 겸용가능)

주: 1. 검사용진로는 1개에 한정한다(단, 총 중량 5.5t 초과 대형차 검사 1개 진로를 추가
설치 가능)

2.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고,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길이 7미터 이상의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으며,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연간 9천6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
3. 리프트는 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검사용 기계·기구 중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기록되고 경형자동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동시험기는 자동차 축하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前)방향 8미터 이상(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전기식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주롤러의 원주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이고,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출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위 표 중 승용자동차에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9.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력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전자장치진단기, 배출가스·공기과잉률측정기 및 배연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 및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전자장치진단기는 원동기부분전자제어장치, 새시(동력전달장치 포함), 에어백(Air Bag),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운전 보조장치(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포함), 구동축 전지 및 연료전지 등에 관련된 전자제어장치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11. 지정정비사업자는 그밖에도 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쇼크업소버)측정기, 하체영상촬영장치 등을 갖추어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3.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는 자동차 고전원 이상의 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및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검사능력별 기술인력 확보수준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	검사진로 당 최소인원수
(가) 800대 이하	1인
(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2인

(다) 1천500대 초과	3인
---------------	----

- 주: 1.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는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 방식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600대를 초과할 수 없고,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 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를 대신할 수 있으며, 검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인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제55조 및 제133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3858